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19
----------	-------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윤후덕 · 진성준 · 김주영
맹성규 · 임호선 · 최기상
김준형 · 정일영 · 이춘석
조승래 · 임미애 · 한정애
홍기원 · 최혁진 · 김남희
염태영 · 백승아 · 박용갑
박지원 · 황 희 · 안태준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외국민등록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가 재외국민의 체류·거주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청장이 출국 후 90일을 초과한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적극 독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현황 파악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한편,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겪는 온라인 본인인

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재외국민의 신
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재외국민등록 권고) ① 재외동포청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출국하여 출국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날까지 귀국하지 아니하고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공관을 방문하는 재외국민 중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 대하여 해당 등록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 그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등록자가 국내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등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등록자가 제1항에 따른 신원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외국민신원확인시

시스템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3(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의 발급 및 확인) ① 재외동포청장은 등록자가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어 제2항에 따라 수록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체류국 내 주소 또는居所, 등록공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록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사항이 자동으로 변경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분실, 훼손 또는 교체 등으로 인하여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재외국민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체류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증명서류 제출이나 첨부요구 없이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원 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원확인 및 제10조의3에 따른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재외국민등록 권고) ① 재외동포청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출국하여 출국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날까지 귀국하지 아니하고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u> <u>② 재외공관의 장은 공관을 방문하는 재외국민 중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 대하여 해당 등록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 그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10조의2(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등록자가 국내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등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재</u>

<신 설>

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등록자가 제1항에 따른 신원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3(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의 발급 및 확인) ① 재외동포청장은 등록자가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어 제2항에 따라 수록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
할 수 있다.

②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체류
국 내 주소 또는居所, 등록공관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록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모바일 재외국
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
8조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9
조에 따른 이동신고를 하는 경
우에는 제2항에 따른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사
항이 자동으로 변경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모바
일 재외국민등록증이 설치된 이
동통신 단말장치의 분실, 훼손
또는 교체 등으로 인하여 모바
일 재외국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
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
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재외국
민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

제12조(자료요청) <신 설>

① (생 략)

<신 설>

호·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증명서류 제출이나 첨부요구 없이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원 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제12조(자료요청)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원확인 및 제10조의3에 따른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u>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
--	---